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0.>

[ ] 입원 · [✓] 격리 통지서

성 명	양희원	생년월일	1994-08-30
입원 · 격리 사유	보훈나라 자가격리자		02-2091-4394
입원 · 격리 내용	입원일 · 격리시행일 2021-06-30 입원기간 · 격리기간 2021-06-30 ~ 2021-07-14 정오까지 입원 · 격리 장소: [ ] 병원 · 의원( ) [✓] 자택 [ ] 시설( ) / 주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 39 (방학동, 삼천리자전거 아파트) 801호 (시민의 집)		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.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1 년 7 월 1 일

도봉구청장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0.>

[ ] 입원 · [✓] 격리 통지서

성 명	원지선	생년월일	1994-03-28
입원 · 격리 사유	확자 밀접 접촉자		
입원 · 격리 내용	입원일 · 격리시행일 2021-06-30 입원기간 · 격리기간 2021-06-30 ~ 2021-07-14 12:00(정오) 입원 · 격리 장소: [ ] 병원 · 의원( ) [✓] 자택 [ ] 시설( ) / 주소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길 9-3, 유성프라임 402호		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.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1 년 07 월 01 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[ ] 입원 · [v] 격리 통지서[13252]

성 명	서유민	생년월일	1997-02-13
입원 · 격리 사유	확자 밀접 접촉자		
입원 · 격리 내용	입원일 · 격리시행일 2021-06-30 입원기간 · 격리기간 2021-07-13 12:00 (정오) ~ 2021-07-14 입원 · 격리 장소: [ ] 병원 · 의원( ) [v]자택 [ ] 시설( ) / 주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16길 31(수유동, 동은골드빌2이)호		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.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1년 06월 30일

서울특별시장 강북구청장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0.>

[ ] 입원 · [√] 격리 통지서

성 명	홍승원	생년월일	1983-01-05
입원 · 격리 사유	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		
입원 · 격리 내용	입원일 · 격리시행일 2021-06-30 입원기간 · 격리기간 2021-06-30 ~ 2021-07-14 입원 · 격리 장소: [ ] 병원 · 의원( ) [✓] 자택 [ ] 시설( ) / 주소: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35다길 92 (성북동, 이화빌라) 203호		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.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1 년 06 월 30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0.>

[ ] 입원 · [V] 격리 통지서 [13274]

성 명	황경진	생년월일	1994-09-07
입원 · 격리 사유	○ 확진자와 접촉자		
입원 · 격리 내용	입원일 · 격리시행일 2021-06-30 입원기간 · 격리기간 2021-06-30 ~ 2021-07-13(12:00, 정오) 입원 · 격리 장소: [ ] 병원 · 의원( ) [V] 자택 [ ] 시설( ) / 주소: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77가길 19 (번동) 203호		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.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3조 및 별표 2에 따른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1-06-30

강 북 구 청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